45 자동차 부품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경추 제5-6-7번간 추간판탈출증, 경부염좌

성별 남 **나이** 45세 **직종** 자동차 부품 제조업 **업무관련성** 높음

1 개 요

근로자 박○○는 1989년 4월 3일부터 (주)○○ ○○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년 1월 4일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염좌, 경추 5-6-7번 추간판탈출증,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으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내용 및 환경

근로자 박〇〇는 1989년 4월 3일 자동차부품업체인 (주)〇〇에 입사하여 주물공장 용해반에서 크레인 운전 및 탄소가루를 주입조에 투입하는 업무, 용광로의 슬래그를 제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. 2008년 1월 1일부터는 반장보로 승진하여 현재 주간에만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, 가끔씩 빈 자리를 보충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. 근무시간은 주/야 교대근무로 주간근무시 08:30~21:00 (잔업 포함)까지이며 야간근무시 21:00~08:30(잔업 포함)까지이다. 크레인 운전은 천정에 부착된 크레인에 탑승하여 아래를 주시하며 크레인 기계를 조작하는데 목 구부림(평균 20도 이상)의 자세가 지속되는 작업으로 그 지속시간이1-2시간 이상 길게 유지되고 있으며,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 자율적으로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리 길지 않으며 연속해서 하루 10시간 정도 작업을 하게된다. 탄소가루 주입 업무는 1일 평균 20kg 중량의 탄소비료 100포대를 용광로에 투척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10~15개의 비료포대를 용광로에 투척하게되며 5분 정도 소요된다. 슬래그 제거 업무는 삼지창을 이용하여 하루 7~8번정도 제거 업무를 수행하며 한 번 수행시 5분 정도 소용된다.

3 의학적 소견

근로자 박○○는 경추부 손상경력이나 고혈압, 당뇨, 결핵 등의 과거력은 없었다. 경추부 증상과 관련해서는 2006년 4월 17일 2달간의 상지 방사통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었는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, 외측 상과염 진단하에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의 호전이 있었다. 2007년 가을부터 증상 악화되어 다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아 2008년 3월 ○○병원에서 수술을 시행 받고 호전되었다. 통증 정도로 본다면 2006년 당시 통증이 100이되어 진료를 받았다면 치료 후 70정도로 호전되었었고, 최근 2007년 가을에는 통증 130정도로 악화되었고, 동일한 치료 후에도 호전없어 수술을 고려하게된 것이다. 경추염좌, 경추 5-6-7번 추간판탈출증,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으로 요양신청 하였다가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에 대해서는 요양승인되었으나 경추 제5-6-7번 추간판탈출증, 경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 불승인되되어 근로자 박○○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인간공학 평가 등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4 결 론

근로자 박이이은

- ① 본 질병은 입사 후 18년이 지난 후 발생하였고, 작업에 따라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고,
- ② 인간공학적 조사결과에서 크레인 작업은 목 구부림(평균 20도 이상)의 자세가 지속되는 작업으로 평가되어 경추부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되며,
- ③ 다른 사고나 취미생활 등의 비직업적 요인이 없었으므로,

근로자 박○○에게 발생한 추간판탈출증(경추부 제5번-6번-7번) 및 경추부 염 좌는 과거력, 인간공학적 평가 및 산업의학적 고찰을 고려할 때, 작업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